
보건소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보건행정과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61명		
사업목적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대상자 검사비 지원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제1항
	제25조(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에 대하여 확진을 위한 정밀검사, 건강위험평가 및 흡연·음주·운동·영양·비만 등 생활습관개선에 사용되는 의료비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13,460	12,200	15,200	-3,000	-1,260	
국비	10,768	9,760	12,160	-2,400	-1,008	
도비	1,346	1,220	1,520	-300	-126	
시비	1,346	1,220	1,520	-300	-126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 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307-01 의료및회복비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경정(12,200,000원)-기정(15,200,000원) =	-3,00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311(2025. 1. 6.)호 관련, 확정 내시 통보
-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경우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인 자 : 최대 20만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311(2025. 1. 6.)호 관련, 가내시 대비 예산 감액 확정내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사업계획 수립
- 2025.01.~2025.12. : 지원 대상자 상담·접수 및 검사비 지원
- 2025.12. : 사업집행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 52명
2024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 75명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2,200	8,817	-	3,383	
2024	13,460	13,460	-	-	
2025	15,200	-	-	15,200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장 연은영	담당자	의료기술9급 김은정	전화	4155
-----	-------	------------	-----	------------	----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1,338개 희귀질환		
사업목적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제1항
	제12조(의료비 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594,694	840,732	520,732	320,000	246,038	
국비	297,347	420,366	260,366	160,000	123,019	
도비						
시비	297,347	420,366	260,366	160,000	123,019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20,000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307-01 의료및회복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경정(840,732,000원)-기정(520,732,000원) =	320,000	

□ 예산요구 사유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희귀질환은 진단이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및 복지수준 제고
 -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수시 및 상·하반기 소득·재산 조사 실시 후 기준 적합 시 지원
- 희귀질환(1,314개 질환) 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과 간병비(100개 질환), 보조기기 구입비(96개 질환),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06개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317(2025. 1. 6.)호 관련, 가내시 대비 예산 증액 확정내시
 - 질병관리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 잔고금액 감안 시군별 예산 조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2025.12. : 희귀질환자 의료비 신청접수, 등록 및 소득·재산 수시 조사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분기별 예탁
- 2025.04.~2025.06. : 소득·재산 정기재조사(상반기)
- 2025.10.~2025.12. : 소득·재산 정기재조사(하반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희귀질환자의료비 지원 : 155명 / 9,079건
2024	- 희귀질환자의료비 지원 : 159명 / 8,233건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870,000	870,000	-	-	
2024	594,694	594,694	-	-	
2025	520,732	-	-	520,732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진료검진팀장 김춘숙	담당자	간호8급 박다윗	전화	4103
-----	-------	------------	-----	----------	----	------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감염병관리과

표본감시운영경비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기관 6개소		
사업목적	주요 감염병 발생추이 관찰, 유행확인 및 감시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16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7,200	8,520	7,200	1,320	1,320	
국비	3,600	4,260	3,600	660	660	
도비	1,080	1,278	1,080	198	198	
시비	2,520	2,982	2,520	462	462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320	
표본감시 운영경비	301-14 기타보상금	·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경정(710,000원*12월)-기정(600,000원*12월)	= 1,320	

□ 예산요구 사유

- 주요 감염병(급성호흡기감염병, 장관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인플루엔자, 성매개감염병, 안과 감염병 등)의 발생 문제 크기를 예측하고 질병 발생 추이 관찰을 위하여 지정된 표본감시 의료기관에 운영비 지급
- 집단발생 유행을 확인하고 홍보 및 교육하여 감염병을 예방관리 하고자 함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감염병관리과-617(2025. 1. 9.)호와 관련,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
- 주요 감염병(4개) 표본감시 기관 1개소 추가 지정으로 1,320천원 증액 (11만원×12개월=1,320천원)
 - 성매개(3만원), 급성호흡기(4만원), 엔테로바이러스(2만원), 장관감염증(2만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12. : 표본감시기관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s://eid.kdca.go.kr>)에 주 1회 환자 보고
- 2025. 03. ~ 11. :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운영경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지급 4개소 - 표본감시 보고현황 · 안과감염병 32건 · 성매개감염병 99건 · 수족구병, 인플루엔자 593건 · 급성호흡기·엔테로바이러스·장관감염증 4,147건
2024	-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지급 5개소 - 표본감시 보고현황 · 안과감염병 44건 · 성매개감염병 71건 · 수족구병, 인플루엔자 629건 · 급성호흡기·엔테로바이러스·장관감염증 1,734건
2025	-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지급 6개소 (1개소 추가) - 표본감시 보고현황 · 성매개감염병 8건 · 수족구병·인플루엔자 342건 · 급성호흡기·엔테로바이러스·장관감염증 79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880	5,880	-	-	
2024	7,200	7,200	-	-	
2025	7,200	-	-	7,200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장 이경희	담당자	간호6급 김기란	전화	4022
-----	--------	-------------	-----	----------	----	------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2개소(김포우리병원, 뉴고려병원)		
사업목적	의료관련감염병 감시체계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16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제4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3,600	3,800	3,600	200	200	
국비	3,600	3,800	3,600	200	200	
도비						
시비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0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301-14 기타보상금	·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경정(1,900,000원*2개소)-기정(1,800,000원*2개소)	= 200	

□ 예산요구 사유

- 의료관련감염병(항생제내성균 4종)에 대한 표본감시 참여의료기관 운영비 (개소 당 1,900천원)
-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 : 김포우리병원, 뉴고려병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감염병관리과-313(2025. 1. 6.)호와 관련,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
 - 표본감시 지정기관 운영비 1,800천원에서 1,900천원으로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1. ~ 12. : 표본감시기관 참여신청서 제출
- 2025. 01. ~ 12. : 의료관련감염병(4종) 감염관리 및 주 1회 감시 보고
- 2025. 04. ~ 10. :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지급
- 2025. 12. :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사업 관리 지표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기획 및 수행 - 의료기관 대상 감염관리 기술지원 및 예방관리 원내감염관리 교육 및 회의 : 13회 - 의료관련감염병 감시 보고: 52회/1,121건
2024	-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사업 수행 - 의료관련감염병 감염관리 및 감시 : 52회/891건 - 의료관련감염병 관리 지표 제출 2회
2025	- 의료관련감염병 감염관리 및 감시 : 1회/38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0,000	20,000	-	-	
2024	3,600	3,600	-	-	
2025	3,600	-	-	3,600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장 이경희	담당자	간호6급 김기란	전화	4022
-----	--------	-------------	-----	----------	----	------

지자체 결핵진단검사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민		
사업목적	결핵 발병 예방과 조기 발견 등 결핵관리를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결핵예방법		제27조 제1항,제2항
	제27조(시·도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제1항,제2항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도가 부담한다. 1.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부의 결핵관리에 드는 경비 2. 제 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관리 등에 드는 경비 ② 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제26조에 따라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5,774	3,848	1,840	2,008	-1,926	
국비	2,887	1,924	920	1,004	-963	
도비	866	577	276	301	-289	
시비	2,021	1,347	644	703	-674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08	
지자체 결핵진단검사 지원	307-01 의료및회복비	· 결핵 진단검사 지원 및 재료비 구입 경정(14,720원*261건)-기정(14,720원*125건)	= 2,008	

□ 예산요구 사유

- 결핵의심자, 결핵진단검사 (항산균도말검사, 흉부X선검사) 지원 및 실험실 진단검사 재료비 구입 (진단검사, 숙련도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약, 초자, 진단키트 등)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감염병관리과-407(2025. 1. 8.)호 관련,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
- '25년 사업량 산출치 증가(125건 → 261건)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결핵진단검사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5.02. : 결핵진단검사 시약 등 재료 구입
- 2025.01. ~ 12. : 결핵진단검사 실시 등 사업 운영
- 2025.12. : 사업 평가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결핵진단검사 123건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5,774	4,625	-	1,149	
2025	1,840	-	-	1,840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장 손정원	담당자	간호8급 이은임	전화	4055
-----	--------	-------------	-----	----------	----	------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4,025건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425건, 에이즈검사 2,000건, 성매개감염병 검진 1,600건)		
사업목적	에이즈·성매개감염병 검사를 통한 감염병 조기 발견 및 HIV감염인 진료비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2조 제1,2호
	법령 위임규정	제22조(비용부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제8조에 따른 검진 비용 2.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에서의 진료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159,524	167,464	168,194	-730	7,940	
국비	79,762	83,732	84,097	-365	3,970	
도비						
시비	79,762	83,732	84,097	-365	3,970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730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307-01 의료및회복비	· 에이즈환자 진료비 경정(1,155,880원*141명)-기정(986,200원*166명)	= -730	

□ 예산요구 사유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의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지원
-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검사를 통한 감염병 조기발견 및 전파방지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감염병관리과-16802(2024. 12. 19.)호 관련,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
- 내국인 생존 감염인 비율에 따른 보조금 확정 통보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12. : 신고 접수 및 환자관리, 에이즈 환자 역학조사 및 진료비 지급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검진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HIV 감염인 등록관리 : 150명 - HIV 감염인 진료비 지원 : 568건(111명) - 검진 실적 : 성매개감염병 1,923건, 에이즈 1,813건
2024	- HIV 감염인 등록관리 : 162명 - HIV 감염인 진료비 지원 : 572건(125명) - 검진 실적 : 성매개감염병 2,478건, 에이즈 2,319건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22,992	103,629	-	19,363	
2024	159,524	142,857	-	16,667	
2025	168,194	-	-	168,194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장 손정원	담당자	의료기술9급 이지연	전화	4061
-----	--------	-------------	-----	------------	----	------

예방접종사업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민		
사업목적	집단면역을 형성하여 감염병의 전파 차단 및 질병의 발생률 감소로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조례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1조, 제3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시민의 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예방접종 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1회) 2. 인플루엔자(매년 1회)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62,650	177,270	156,590	20,680	114,620	
국비						
도비						
시비	62,650	177,270	156,590	20,680	114,620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680	
예방접종사업	307-01 의료 및 회복비	· 대상포진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 20,000원*1,034명	= 20,680	

□ 예산요구 사유

- 대상포진 생백신 구입비 예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편성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방법 : 위탁의료기관에서 대상자 접종 후 보건소로 비용상환 신청

□ 예산증감 사유

- 65세 이상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1회) 신규 추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계획수립, 대상포진 생백신 계약
- 2025.02. : 위탁의료기관 모집공고,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정비, 사업홍보
- 2025.03. ~ 12. :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 2025.12.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B형간염(성인 고위험군) 백신 구입: 1,000도즈 - 예방접종 홍보 안내문 및 예진표 제작: 6,000매 -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 2,000도즈
2024	- B형간염(성인 고위험군) 백신 구입: 850도즈 - 예방접종 홍보 안내문 및 현수막 제작: 8,000매 -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 및 시행비 지급: 1,500도즈
2025	-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25년 신규사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6,224	45,752	-	472	
2024	62,650	56,877	-	5,773	
2025	156,590	-	-	156,590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장 손정원	담당자	간호8급 이해진	전화	4067
-----	--------	-------------	-----	----------	----	------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민		
사업목적	예방접종 실시로 감염병 사전 예방 및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2항, 제28조 제1항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법 적 근 거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및 질병관리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8,542,236	8,466,612	8,460,974	5,638	-75,624	
국비	4,271,118	4,233,306	4,230,487	2,819	-37,812	
도비	1,281,333	1,269,775	1,269,146	629	-11,558	
시비	2,989,785	2,963,531	2,961,341	2,190	-26,254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638	
국가예방접종 실시	307-01 의료및회복비	· 어린이 예방접종 경정(53,293원*95,992건)-기정(53,293원*95,663건)	=	17,526
		· 60개월~12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경정(29,100원*31,595건)-기정(29,100원*30,374건)	=	35,544
		· 13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경정(29,100원*3,608건)-기정(29,100원*3,467건)	=	4,090
		·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경정(29,100원*1,466건)-기정(29,100원*1,412건)	=	1,592
		· HPV 미접종자 예방접종 경정(85,861원*1,169건)-기정(85,861원*1,154건)	=	1,178
		· 성인 예방접종 경정(30,619원*70,580건)-기정(30,619원*72,353건)	=	-54,292

□ 예산요구 사유

- 어린이(12세 이하)·성인 필수예방접종의 접종비용(백신비 및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함
 - 어린이(19종): ①BCG②B형간염③DTaP④Td⑤Tdap⑥폴리오⑦DTaP-IPV⑧DTaP-IPV/Hib⑨수두 ⑩소아폐렴구균⑪MMR⑫뇌수막염⑬일본뇌염(사백신)⑭일본뇌염(생백신)⑮A형간염 ⑯인유두종바이러스⑰소아인플루엔자⑱로타바이러스⑲DTaP-IPV/Hib/HepB
 - 성인(4종): ①인플루엔자 ②폐렴구균 ③장티푸스(고위험군) ④신증후군출혈열(고위험군)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감염병관리과-204(2025. 1. 3.)호 관련,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
- '25년 사업량 산출치 증가(205,595건 → 207,476건)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국가예방접종사업지침 시달 및 예방접종사업 계획 수립
 - 2025. 01. ~ 12. : 매월 2회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상환 심사 및 비용 지급
 - 2025. 03. ~ 06. : 위탁의료기관 연 2회 자율점검 및 연 1회 방문점검 실시
 - 2025. 09. ~ 12. : '25-'2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계약 및 백신 배정 예방접종 홍보, 접종비용 상환 심사 및 비용 지급
 - 2025. 12. : 사업 집행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90,142건 -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국가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4,704건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및 검사비 지원 실적: 150건 - 인플루엔자(어린이,임신부,어르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111,055건 -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5,226건
2024	-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113,636건 -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국가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4,475건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및 검사비 지원 실적: 113건 - 인플루엔자(어린이,임신부,어르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106,7992건 -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5,864건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8,355,990	8,355,966	-	24	
2024	8,542,236	8,542,208	-	28	
2025	8,460,974	-	-	8,460,974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장 손정원	담당자	간호8급 정한솔 간호8급 김소영	전화	4156 4158
-----	--------	-------------	-----	----------------------	----	--------------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보건사업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민 673명 ※ 정신건강 고위험군		
사업목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하여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이하 “생애주기”라 한다)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울·불안·고독 등의 정신건강상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해당조례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11조(부담의 경감 등)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254,397	430,795	521,397	-90,602	176,398	
국비	178,078	301,556	364,978	-63,422	123,478	70%
도비		19,386	23,463	-4,077	19,386	4.5%
시비	76,319	109,853	132,956	-23,103	33,534	25.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30,795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제공: 640,000원*약 673명	= 430,795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정신건강과-18416(2024.12.31.)호 관련, 2025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

□ 예산증감 사유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5158(2024.12.20.)호 관련, 시군별 인구 비율에 따라 배정
 - 경기도 인구 대비 김포시 인구비율 3.6%(430,795천원) 배정
- 심리상담 바우처 8회 제공 : 1인당 최대 정부지원금 64만원 / 년 1회 신청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투자심사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계획 수립
- 2025.01. ~ 2025.12.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추진, 사업홍보 및 제공기관 모집
- 2025.12. : 결과보고 및 사업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신규사업으로 추진실적 없음
2024	-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제공 : 459명(2024년 7월 사업 시작) - 제공기관 등록 : 8개소
2025	-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제공 : 19명 - 제공기관 등록 : 9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254,397	254,397	-	-	
2025	521,397	-	-	521,397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심필기	담당자	간호8급 이미나	전화	4124
-----	-------	------------	-----	----------	----	------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과정

사업기간	2025. 1. 1.~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1명		
사업목적	지역의 우수건강지표를 발굴하고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양호하게 변화하는 건강지표의 영향요인 분석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지역보건법		제16조 제3항
	제 16조(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1,836	1,884	1,910	-26	48	
국비	918	942	955	-13	24	
도비		0			0	
시비	918	942	955	-13	24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6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만성질환예방관리 전문교육 : 경정(1,884,000원)-기정(1,910,000원)	= -26	

□ 예산요구 사유

-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우수건강지표와 보건사업과의 연관성 정리 및 효과 분석, 지역 통계 활용 기법 이해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21(2025. 1. 2.)호와 관련, 2025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025. 2. :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대상자 선발
- 2025. 3.~2025. 10. :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파견
- 2025. 11. : 시·도별 자체 평가대회 참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과정 수료: 1명
2024	-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과정 수료: 1명
2025	-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대상자 선발: 1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940	1,940	-	-	
2024	1,836	1,836	-	-	
2025	1,884	-	-	1,884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장 신수정	담당자	보건8급 고은애	전화	4165
-----	-------	------------	-----	----------	----	------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사우중로 73번길 52
사업규모	1개소(698.27㎡), 고촌읍·동지역 주민		
사업목적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및 환자와 가족의 질 향상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치매관리법		제3조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420,000	294,851	352,782	-57,931	-125,149	
국비	336,000	235,881	282,225	-46,344	-100,119	80%
도비	12,600	8,846	10,584	-1,738	-3,754	3%
시비	71,400	50,124	59,973	-9,849	-21,276	17%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7,931	
치매안심센터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명/8개월) : 경정(154,500,000원)-기정(164,702,000원) = -10,202 · 기본급: 경정(79,800원*8명*8개월)-기정(79,800원*8명*8개월) = 0 · 유급수당: 경정(79,800원*8명*8개월)-기정(79,800원*8명*8개월) = 0 · 4대보험료 등: 경정(25,684,070원*8명*14%)-기정(34,793,000원*8명*14%) = -10,202 소계 = -10,202		
	201-01 사무관리비	· 소모품(토너, 인쇄용지)구입: 경정(40,000원*12월)-기정(500,000원*12월) = -5,520 · CIST 제작 구입비(치매선별검사지): 경정(400원*6,000매)-기정(400원*7,000매) = -400 · 운영평가 지침 제본비: 경정(0원)-기정(20,000원*5개) = -100 ·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 제본비: 경정(0원)-기정(20,000원*5개) = -100 · 치매극복선도 학교, 단체 운영: 경정(800,000원*6개소)-기정(1,200,000원*6개소) = -2,400 · CERAD-K(신경심리검사) 전자검사 앱 구입: 경정(6,500원*700개)-기정(6,500원*1,000개) = -1,950 · 맞춤형 치매돌봄 사례관리 지원물품 : 경정(3,000원*50명*12월)-기정(4,000원*50명*12월) = -600 · 실종예방 스마트태그 구입: 경정(17,000원*50개)-기정(17,000원*100개) = -850 · 홍보물품 구입: 경정(25,000원*12월)-기정(141,250원*12월) = -1,395 · 협의체 운영 참석 수당: 경정(80,000원*7명*2회)-기정(80,000원*8명*2회) = -160 소계 = -13,475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 건물운영 관리비(수도, 전기 등) : 경정(2,400,000원*12월)-기정(2,800,000원*12월)	= -4,800	
		· 환경정비 관리 용품: 경정(60,000원*12월)-기정(100,000원*12월)	= -480	
		· 조기검진 안내 등 우편발송: 경정(210,000원*1회)-기정(250,000원*4회)	= -790	
		· TV유선방송 및 공용폰 사용료: 경정(70,000원*12월)-기정(80,000원*12월)	= -120	
		· 관용차량 유류비: 경정(0원)-기정(30,000원*2대*12월)	= -720	
		소계	= -6,910	
	201-03 행사운영비	· 치매극복의날 행사 운영: 경정(2,000,000원*1회)-기정(3,000,000원*1회)	= -1,000	
		· 쉼터 문화체험 및 치매가족의 밤 행사 운영 : 경정(10,000원*50명)-기정(11,000원*150명)	= -1,150	
		소계	= -2,150	
	301-11 행사실비지원금	· 가족카페 및 치매가족 자조모임 지원 : 경정(50,000원*12월)-기정(270,000원*12월)	= -2,640	
		· 쉼터 문화체험 및 치매 가족의 밤 행사 급량비 : 경정(10,000원*50명)-기정(10,000원*150명)	= -1,000	
		소계	= -3,640	
301-14 기타보상금	· 치매환자 인지 재활·예방·강화 프로그램 강사비 : 경정(70,000*11회*12월)-기정(70,000원*24회*12월)	= -10,920		
	· 치매가족 교육·힐링 프로그램 강사비 : 경정(70,000원*1회*2월)-기정(70,000원*3회*6월)	= -1,120		
	소계	= -12,040		
307-01 의료및회복비	· 조호물품(성인용 기저귀 등) : 경정(3,321,500원*12월)-기정(4,100,000원*12월)	= -9,342		
	· 혈당 소모품 등: 경정(30,000*1회)-기정(50,500*4회)	= -172		
	소계	= -9,514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보건 의료정책과-640(25. 1. 10.)호 관련, 확정예산 반영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확정내시 감액
- 5년 연속('20년~'24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공모사업 선정되었으나 '25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폐지로 인한 인건비 편성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감액 편성(보건사업과 기본경비 사용)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02. : 치매관리사업 계획수립 및 치매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 2025. 01. ~ 2025.12. : 치매통합관리사업 추진
(치매 조기검진, 맞춤형 사례관리, 예방·인지 프로그램, 가족 지원, 경증치매 쉽터운영, 인식개선사업 등)
- 2025. 09. : 제18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 실시
- 2025. 11. : ‘지역사회치매관리율’ 정부합동평가 자료 작성
- 2025. 12. : 치매가족의 밤 행사 및 사업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세 이상 치매선별검사: 3,040명 / 환자 등록 관리: 1,966명 / 진단·감별검사: 384명·156명 - 치매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51명 /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등): 1,125건(실인원 339명) - 치매노인 실종예방: 배회인식표 발급 73명 / 지문등록: 117명/ 배회감지기 지원: 35명 - 경증치매 인지재활프로그램: 300회(1,877명) / 경도인지장애·정상군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113회(860명) - 치매 가족 교실, 치매 가족 자조 모임 등 프로그램 운영: 92회(738명) - 치매인식개선: 치매극복선도학교(2개소), 치매극복선도단체(3개소)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세 이상 치매선별검사: 4,740명 / 환자 등록 관리: 2,247명 / 진단·감별검사: 469명·139명 - 치매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61명 /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등): 2,146건(실인원 412명) - 치매노인 실종예방: 배회인식표 발급 78명 / 지문등록: 135명/ 배회감지기 지원: 43명 - 경증치매 인지재활프로그램: 346회(2,455명) / 경도인지장애·정상군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158회(1,617명) - 치매 가족 교실, 치매 가족 자조 모임 등 프로그램 운영: 85회(714명) - 치매인식개선: 치매극복선도학교(2개소), 치매극복선도단체(4개소)
2025	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47,732	346,985	-	747	
2024	420,000	418,571	-	1,429	
2025	352,782	-	-	352,782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치매관리팀장 양은정	담당자	의료기술8급 천유경 간호8급 변희연	전화	4167 4168
-----	-------	------------	-----	------------------------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사우중로 73번길 52
사업규모	775명(중위소득 140% 이하 치매 치료약 복용자)		
사업목적	치매를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악화 방지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치매관리법		제12조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247,000	278,640	256,298	22,342	31,640	
국비		0			0	
도비	142,025	160,218	147,371	12,847	18,193	57.5%
시비	104,975	118,422	108,927	9,495	13,447	42.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2,34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307-01 의료및회복비	· 치매치료관리비 : 경정(359,900원*775명)-기정(359,900원*712명)	= 22,342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725(2025. 1. 13.)호 관련, 확정예산 반영
- 대 상 : 치매분류코드(F00~03, G30)로 처방받고 치매 치료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40% 이하
- 지원액 : 월 최대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치매치료관리비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24년 120% 이하 → '25년 140% 이하로 확대 지원으로 증액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자 수 7% 증가('23년 1,118명, '24년 1,196명), '25년 소득 기준 완화로 목표치 9% 상향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계획수립 및 홍보
- 2025.01. ~ 2025.12. : 대상자 지원 자격 심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 및 치매치료관리비 예탁
- 2025.05. ~ 2025.06. : 상반기 치매치료관리비 대상자 정기 소득 재조사
- 2025.11. ~ 2025.12. : 하반기 치매치료관리비 대상자 정기 소득 재조사
- 2025.12.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결과 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002명 / 4,846건
2024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116명 / 5,826건
2025	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86,718	286,718	-	-	
2024	247,000	247,000	-	-	
2025	256,298	-	-	256,298	1. 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치매관리팀장 양은정	담당자	간호8급 변희연	전화	4168
-----	-------	------------	-----	----------	----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사우중로 73번길 52
사업규모	207명(기준중위소득 120%이상 치매 감별검사비 대상자)		
사업목적	치매 검사비 지원을 통한 치매 조기발견 및 중증화를 지연시키고 사회적 비용과 보호자 부담 경감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치매관리법		제12조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16,500	13,277	3,223	16,500	
국비		0			0	
도비		4,950	3,983	967	4,950	30%
시비		11,550	9,294	2,256	11,550	7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 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223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307-01 의료및회복비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경정(80,000원*206명)-기정(80,000원*165명)	= 3,223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766(2025. 1. 14.)호 관련, 확정예산 반영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대 상 :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 원인규명(혈액검사, 뇌영상 촬영)이 필요한 자
 - 소 득 : (기존)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 → (확대)기준 중위소득 120%이상 지원
 - 내 용 : 치매원인에 대한 감별검사 항목 중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 상한 8만원 실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24년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 → '25년 기준 중위소득 120%이상 지원
- '24년 치매 진단자 273명 기준 감별검사비 지원 신청 예상인원 207명(75%) 산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2.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홍보
- 2025.02. ~ 2025.12.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2025.12. : 사업집행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신규사업으로 추진실적 없음
2024	- 신규사업으로 추진실적 없음
2025	- 신규사업으로 추진실적 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13,277	-	-	13,277	1. 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치매관리팀장 양은정	담당자	간호8급 변희연	전화	4168
-----	-------	------------	-----	----------	----	------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북부보건센터



북부권 치매통합관리 체계 강화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77
사업규모	북부권 5개 읍, 면 60세 이상 주민		
사업목적	치매상담, 조기검진, 등록관리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 경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치매관리법		제3조
	법령 위임규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240,000	178,573	244,271	-65,698	-61,427	
국비	192,000	142,858	195,417	-52,559	-49,142	
도비	7,200	5,357	7,328	-1,971	-1,843	
시비	40,800	30,358	41,526	-11,168	-10,442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5,698	
북부권 치매통합관리 체계강화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 인건비 - 기본급: 경정(91,200원*3명*160일)-기정(79,800원*5명*165일) = -22,059 - 유급휴일수당: 경정(91,200원*3명*40일)-기정(79,800원*5명*41일) = -5,415 - 4대 보험료: 경정(3,590,000원*3명*14%)-기정(18,620,000원*5명*14%) = -11,526 - 명절휴가비: 경정(500,000원*3명*1회)-기정(500,000원*5명*1회) = -1,000		-40,000
	201-01 사무관리비	· 송영서비스 차량 임차료: 경정(0원*0월)-기정(625,000원*8월) = -5,000 · 치매검사용지 및 홍보물 제작 등: 경정(5,433,000원)-기정(9,541,000원) = -4,108 · 치매안심마을 환경보수 등: 경정(1,500,000원)-기정(2,500,000원) = -1,000		-10,108
	201-02 공공운영비	· 치매조기검진 독려 우편요금: 경정(0원*0회)-기정(1,265,000원*2회) = -2,530		
	201-03 행사운영비	· 치매어르신 소풍가는날(문화치유 행사) : 경정(0원*0회)-기정(120,000원*4회) = -480		
	301-11 행사실비지원금	· 문화치유행사 급식비: 경정(0원*0명*0회)-기정(9,000원*10명*4회) = -360		
	301-14 기타보상금	· 협력의사 수당: 경정(13,820,000원)-기정(16,040,000원) = -2,220		
	307-01 의료 및 회복비	· 조호물품 구입: 경정(2,750,000원*12월)-기정(3,583,300원*12월) = -10,000		

□ **예산요구 사유**

-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유병을 증가추세로 치매예방, 환자 조기발견 등 치매지원사업 필요
- 치매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강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조호물품 및 쉼터운영 등 치매환자 지원비, 치매진단을 위한 협력의사 진료비 등 통합적 치매관리서비스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365(2025.1.7.)호 관련, 2025년 치매관리사업 국도비 보조금 감액 내시
- 사업비의 경우 본예산 편성 대비 25,698천원 감액 내시되어 필수불가결한 사업 외 삭감 편성
 - '24년 사업비(217,380천원) 대비 '25년의 경우 75,573천원 편성되어 65.2% 감액됨.
- 인건비(기간제근로자 보수비)는 본예산액 143,000천원에서 40,000천원 감액 내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 : 사업계획서 수립 및 사업 홍보
 - 2025. 2. ~ 3. :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의
 - 2025. 1. ~ 12. : 북부권 치매관리사업 추진
 - 2025. 12. : 사업 평가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 17.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인지선별검사: 1,731명 / 치매환자 등록 관리: 1,067명 / 진단·감별검사: 180명·84명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399명 /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261명 - 치매노인 실종예방: 배회인식표 발급 32명/ 지문등록 55명 / 배회감지기 17건 - 인지강화 및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경증치매(92회/622명), 고위험군(38회/374명), 정상군(28회/238명) - 치매예방교육: 3,078명 /치매안심마을 운영 4개소 - 치매안심마을 운영 4개소
2024	- 인지선별검사: 2,061명 / 치매환자 등록 관리: 1,199명 / 진단·감별검사: 174명·84명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455명 /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279명 - 치매노인 실종예방: 배회인식표 발급 31명/ 지문등록 56명 / 배회감지기 10건 - 인지강화 및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경증치매(98회/661명), 고위험군(41회/403명), 정상군(60회/667명) - 치매예방교육: 3,249명 / 치매안심마을 운영 4개소
2025	- 인지선별검사: 83명 / 치매환자 등록 관리: 1,208명 -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71명 / 진료 및 진단검사 : 29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10,268	206,347	-	3,921	
2024	240,000	235,256	-	4,744	
2025	244,271	-	-	244,271	1.17.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북부보건센터	치매관리팀장 장미경	담당자	간호8급 김한나	전화	4212
-----	--------	------------	-----	----------	----	------